

#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안)

2005. 12. 1. 제정  
2006. 3. 1. 개정  
2007. 3. 6. 개정  
2007. 8. 1. 개정  
2020. 3. 1.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산 섬유소재 수요촉진 및 제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이하 “마크”라 한다)”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섬산련”이라 한다)가 제정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별지 제1호 서식)를 말한다.
2. “대상품목”이라 함은 국산 소재로 국내에서 제조된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으로서 상세 품목은 섬산련 회장이 위촉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국산소재”라 함은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 완성품 전단계의 주 소재가 국내에서 방적된 사류(쉐타, 양말 등)이거나 국내에서 제직, 편직된 원단을 말한다.
4. “신청자”란 마크의 사용권을 받기 위해 마크 계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마크 계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심사  
 련 회장과 사용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사용 계약서”란 별지 제3호 서식에 사용자와 상표권자인 심  
 산련 회장이 마크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상호 합  
 의하에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7. “사후관리”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 인증마크 제품에 대  
 한 샘플링 조사 또는 마크 사용자의 사업장 현장실사를 통해  
 동 운영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인증대상 및 품질기준

**제3조 (인증대상)** 인증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상품  
 류 구분표(제28조 제1항 관련)의 처. 제24류(직물 및 직물제품)와  
 커. 제25류(의류, 신발, 모자)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써, 동 규  
 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산 섬유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 제4조 (품질기준)** ① 심사련 회장은 필요시 마크발급 품목의 특성  
 에 맞는 품질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 성능  
 및 제조, 관리수준을 파악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 ② 신청자는 제1항에 의거 신청품목의 품질이 심사련 회장이 제  
 시한 품질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제3장 계약신청 및 관리

- 제5조 (계약의 신청 및 체결)** ① 국산 섬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계약신청서”를 심사련 회장에게 신청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마크 사용계약을 신청한 업체의 적합성 평가시  
 서면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 ③ 현장실사는 심사련 담당자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해당 업체의 관련 설비보유 유무, 생산인력 현황 등을 점검한다.
- ④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자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동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⑤ 심사련 회장은 마크사용 계약을 신청한 업체의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수준이 낮거나 인체에 유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마크 사용계약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⑥ 계약체결시 “사용계약서” 제1조(지정상품)에 인증 대상품목을 세부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최초 계약신청서 및 마크발급 신청서상 기재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심사련 회장에게 계약변경 승인요청을 증빙서류와 함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련 회장은 계약변경 승인요청서가 접수되면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변경계약의 경우 계약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 중 대표자 주소 또는 업체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갱신)** ① 심사련 회장은 사용자에게 인증마크 사용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일 통보 및 갱신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② 사용자가 동 계약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재계약 요청서”를 심사련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사권 회장은 사용자의 재계약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기존 마크 활용실적 등을 검토해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갱신기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동 재계약 요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용자와의 사용계약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수수료 징수 및 반환)** ① 심사권 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약 신청서 접수에 따른 인증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에 따른 계약신청 수수료(이하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심사권 회장은 신청자의 수수료 납부완료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고, 신청자에게 인증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심사권 회장은 신청자가 인증심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신청서의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장 마크발급 및 관리

**제9조 (마크의 사용)** ① 마크는 심사권 회장과 동 규정 제5조에 의거 인증마크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 ② 심사권 회장은 사용자가 생산하는 대상품목의 품질수준이 낮거나 인체에 유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마크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마크 사용계약의 체결, 국산 소재 사용여부 확인 및 마크가 발급된 이후에는 동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마크의 신청 및 발급)** ① 마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마크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발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서류를 심사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섬유소재 국내생산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2. 국내 위탁생산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3. 가공 과정 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4. 기타 섬산련 회장이 요청하는 자료

- ② 섬산련 회장은 마크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성 평가를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실시 할 수 있다
- ③ 섬산련 회장은 마크 발급심사를 거쳐 발급승인이 결정되면 사용자 및 지정인쇄소에 마크발급 번호 및 수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마크 표식 제작)** ① 사용자는 제10조 제3항에 의거 별지 제 1호 서식의 마크 도안을 제12조 제1항의 꼬리표(Tag) 형태로 섬산련 회장이 지정한 인쇄소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 제12조 제2~5항의 마크 표식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 후 지정업체에서 제작·사용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마크를 도용 또는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제13조 제2항의 표식내용을 변경하여 표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섬산련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마크 표식의 종류)** 마크 표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꼬리표(Tag)
2. 라벨(Label)
3. 스티커(Sticker)
4. 상품 광고나 설명을 위한 인쇄물
5. 기타 섬산련 회장이 인정하는 표식

**제13조 (마크의 도안 및 내용)** ① 제12조 각 호의 표식에 사용되는 마크의 도안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② 제12조 마크표식 내용에는 인증문구, 발급번호, 섬산련 로고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장 위원회 운영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관 회장은 마크 사용 계약 및 발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① 동 운영규정의 제·개정 사항
- ② 국산 섬유제품 인증 대상품목의 선정 및 변경여부
- ③ 발급 대상품목 특성에 맞는 품질기준의 제정 및 개정여부
- ④ 제12조 및 제13조의 마크 표식의 종류와 내용의 변경
- ⑤ 신청 수수료의 결정 및 징수여부
- ⑥ 상표법 및 동 운영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용자 제재사항
- ⑦ 기타 심사관 회장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심사관 회장은 계약신청 및 마크발급 관련 업무의 일부를 전문 연구기관, 섬유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심사관 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계약의 신청 및 체결), 제7조(계약의 갱신), 제10조(마크의 신청 및 발급)의 현장실사에 관한 업무
2. 제17조(사후 관리)의 현장실사에 관한 업무

③ 위탁 기관은 매월 말 기준으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해 심사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사후관리 및 계약해지

**제17조 (사후관리)** ① 심사관 회장은 마크 발급과 관련하여 허위표

시, 유사표시 및 과대광고 등 수시로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섬산련 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류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크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섬산련 회장은 국산 인증마크 계약체결 업체에 대해서는 년 1회 이상 현장실사를 통하여 국내 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섬산련 회장은 사후관리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 관계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섬산련 회장은 동 규정 제 16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의한 위탁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 ⑥ 섬산련 회장은 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업계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18조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 ① 섬산련 회장은 제17조 1항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섬산련 회장은 마크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상표법(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등의 법령의 규정, 동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마크를 사용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마크 사용계약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상의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전매 또는 대리사용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4.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계약서'상의 인증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사용자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내에 시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사용자의 기타 행위가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간주될 경우
7. 마크 사용계약 체결 후 6개월간 마크발급 실적이 없는 경우

부 칙

(제정)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06년 9월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본 규정은 200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본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